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람	기 관 의 장

공보

제 839 호 2013. 9. 9(월)

고 시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150호[도로명주소 고시] 2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151호[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4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152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6

공 고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794호[울산광역시 북구 201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수립에 따른 수요조사] 8

회람								

발행: 울산광역시북구 편집:기획홍보실(☎241-7124 행정7124)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 - 150호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구유길 46-2외 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3. 9. 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구유동 127-11	울산광역시 북구 구유길 46-21(구유동)	2013-09-09	법정동인 구유동에 위치해서 도로명 부여하였다.	2004-08-09	
2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718 6-1L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6길 28(진장동)	2013-09-09	옛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명칭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12-27	
3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118 4-1L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3길 1(진장동)	2013-09-09	옛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이름으로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친숙한 이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12-27	
4	울산광역시 북구 시례동 465	울산광역시 북구 인시례길 226(시례동)	2013-09-09	기존 자연마을인 인시례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08-09	직권부여
5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684-1, 685-12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4길 7(호계동)	2013-09-09	호계시장에위치하여도로명부여하였다.	2009-08-20	관련지번정정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 - 151호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우리구 관내 도로명주소 변경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변경사항 :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731외 3건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3. 9. 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조서

순번	종전주소	변경 전 도로명주소	변경 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 사유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604-14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731(양정동)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553-1(양정동)	2013-09-09	중복부여	
2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379-2	울산광역시 북구 상방로 177-1(연암동)	울산광역시 북구 상방로 153-1(연암동)	2013-09-09	종속도로구간 변경	
3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379-3	울산광역시 북구 상방로 177-3(연암동)	울산광역시 북구 상방로 153-3(연암동)	2013-09-09	종속도로구간 변경	
4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419-1	울산광역시 북구 상방로 177-5(연암동)	울산광역시 북구 상방로 153-5(연암동)	2013-09-09	종속도로구간 변경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 - 152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복성길 10외 2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3. 9. 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등에 의거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복성길 10	울산광역시 북구 구유동 188	2013-09-09	건축물 대장 말소	
2	울산광역시 북구 약수3길 97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86-12	2013-09-09	건축물 대장 말소	
3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4길 5-2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684-1	2013-09-09	건물 멸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 - 794호

201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실시 홍보

2013. 9.

울 산 광 역 시 북구청

(도 시 녹 지 과)

□ **관리계획의 수립**

○ 법적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2조

○ 계획기간 : 2012년 ~ 2016년(5년)

○ 대상지역 : 울산권 개발제한구역

□ **기초조사 실시**

○ 조사항목 : 11개 분야 21개 항목(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현황, 시설물 등 기초자료)

- 기본현황 : 개발제한구역내 인구 및 가구 현황 등
- 시설현황 : 관리계획 반영대상 시설물(도시계획시설, 대규모시설)

도시계획시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등 교통시설, 광장,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공공 문화체육시설,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등 환경기초시설로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대규모 시설	토지형질변경 1만㎡ 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3,000㎡ 이상

○ 조사기간 : 2013. 9. ~ 2013. 10. 31.

○ 조사기관 : 구·군

○ 조사절차 ┌ 기본현황 : 구·군 자체 현황 조사

└ 관리계획 반영대상 시설현황 : 관리주체별 자체 작성 후 구·군에 제출

□ **공지사항**

○ 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시설물중 금번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시설물은 향후 2016년까지 불허가

○ 기본현황 외 개별 관리계획 반영대상 시설물은 허가권자인 해당 구·군에 허가가능여부 등 세부 작성방법에 대하여 사전 협의 후 시설물별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구·군에 접수하여야 함
(반드시 해당 구·군별 접수마감일 확인 준수)

○ 구비서류 및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설물 설치 대상지 구·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군별 담당부서

구 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	비 고
중 구	건설도시국 도시과	290-3923	290-3909	
남 구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	226-5883	226-5256	
동 구	건설도시국 도시디자인과	209-3874	209-3859	
북 구	도시경제국 도시녹지과	241-7904	241-7909	
울주군	건설도시국 도시과	229-7774	229-7779	

관리계획 수립 대상 시설물 및 관리기관 분류

※ 본 자료는 작성자의 편의를 돕고자 발췌 및 예상되는 관리기관을 분류한 것이므로 관리계획 신청기관에서 시설별, 용도별분류 및 관련 규정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대상 여부	설치 주체	관련기관	비 고
공공공지 및 녹지		비대상			
하천 및 운하	하천내 설치 건축연면적 1,500㎡초과	대 상	항만청		
등산로, 산책로 등	형질변경 1만㎡, 건축연면적 500㎡초과	대 상	지자체		
실외체육시설	형질변경 1만㎡, 건축연면적 500㎡초과	대 상	시행자		
실내체육관	2층 이하, 연면적5,000㎡이하	대 상	시행자		
골프장		대 상	시행자		
휴양림, 수목원	형질변경 1만㎡, 건축연면적 3,000㎡초과	대 상	산림청 지자체		형질 5만, 연면적1,500㎡이하(국토부 협의시제외)
청소년수련시설	형질변경 1만㎡, 건축연면적 3,000㎡초과	대 상	교육청 지자체		
자연공원		대 상	국가, 지자체		국토부 협의시제외
도시공원	5만 또는 공원시설이 30%이상, 연면적 1,500㎡이상	대 상	지자체		
잔디광장 및 피크닉장	국가, 지자체 형질변경 1만㎡, 건축연면적 3,000㎡초과	대 상	국가, 지자체		국토부 협의시제외
탑 또는 기념비	국가, 지자체, 높이5m이하, 형질변경 1만㎡, 건축연면적 3,000㎡초과	대 상	국가, 지자체		국토부 협의시제외
관리·전시 홍보관련시설	형질변경 1만㎡, 건축연면적 3,000㎡초과		국가, 지자체		

시설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대상 여부	설치 주체	관련 기관	비 고
수목장림	형질변경 1만㎡, 건축연면적 3,000㎡초과		시행자		
철도	정거장, 철도기지, 철도연구시설	대 상	철도공사		
궤도 및 삭도	통신, 군사시설에 한함	대 상	철도공사		
도로 및 광장	관리용건축물, 휴게실, 주차장, 미협의 교통광장	대 상	도로공사		
방재시설		비대상			
관개 및 발전용수로		대 상	전력공사		국토부 협의시제외
저수지 및 유수지		대 상	농촌공사 수자원공사		
수도 및 하수도	정수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대 상	지자체		
공동구		비대상			
전기공급시설	330㎡초과	대 상	전력공사		
전기통신시설, 방송시설, 중계탑시설	330㎡초과	대 상	전력공사 통신공사		
송유관		비대상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비대상			
버스차고지		대 상	지자체		
공항		대 상	항공청		
항만		대 상	항만청		
환승센터		대 상	지자체		
주차장		대 상	시행자		
학교		대 상	교육청		
지역공공시설		대 상	지자체		
국가 안전 보안시설		대 상	국가		
폐기물 처리시설		대 상	국가, 지자체		

시설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대상 여부	설치 주체	관련기관	비 고
가스공급시설	330㎡초과	대 상	시행자		경동가스
유류저장설비		비대상			
기상시설		비대상			
장사관련시설		대 상	시행자		
환경오염 방지시설		대 상	국가, 지자체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	형질변경 1만㎡, 건축 연면적 3,000㎡초과	대 상	시행자		
동물보호시설	형질변경 1만㎡, 건축 연면적 3,000㎡초과	대 상	시행자		
문화재관리용	300㎡초과	대 상	국가, 지자체		
경찰훈련시설	형질변경 1만㎡, 건축 연면적 3,000㎡초과	대 상	경찰청		
국방군사시설	형질변경 1만㎡, 건축 연면적 3,000㎡초과	대 상	국방부		
구역 주민 생활편익 및 생업시설 동식물관련시설		비대상			
농수산물보관 관련시설		비대상			
주 택		비대상			
근린생활 시설		비대상			
주민공동 이용시설	형질변경 1만㎡, 건축 연면적 3,000㎡초과	대 상	시행자		

■ 입지대상시설 체크리스트

구 분	내 용	비 고
1 사업의 개요	• 위치 • 면적(사업부지면적, 형질변경면적, 건축연면적) • 시설내용(형질변경 시설 및 건축물 내용, 층수) • 사업기간(목표년도 이내) • 사업비(재원조달계획 및 단계별 집행계획) • 사업시행자	
2 설치목적	• 시설설치의 시급성 및 불가피성을 구체적으로 설명	
3 입지필요성	• GB내 설치할 수 밖에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	
4 시설의 수요	• 시설의 수요 및 설치규모의 적정성	
5 이용객 수요근거	• 시설의 수요에 따른 이용인구의 구체적인 산출근거 제시	
6 이용권역 설정도	• 이용권을 도면으로 표현	
7 입지근거	• GB내 설치가능 시설인가에 대한 법적 검토자료	
8 시설 내 설치물 등에 관련 검토	• 시설내 설치하는 시설, 건축물의 규모 및 기준 등에 관한 법적검토	
9 추진경위	• 현재까지 진행상황 제시	
10 현황	• 위성사진 및 지형도면을 이용하여 대상지 주변현황과 주요시설 설명	
11 지구계 결정사유	• 지구계 결정 사유 및 GB구역 표기	
12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도 및 표 제시	
13 소유자별 토지이용 현황	• 소유자별 토지이용 현황도 및 표 제시	
14 환경평가등급도	• 환경평가1,2등급지 내 시설입지 불가원칙 • 기 훼손된 부지 내 시설입지토록 계획	

구 분		내 용	비 고
15	현황 분석도면	• 보존산지도, 생태자연도, 녹지자연도 제시 - 시설배치도와 함께 표기	
16	시설별 규모산정 근거제시	• 규모산정 근거산식에 의해 소요면적, 적용면적 설명 (주차장의 경우 주차규모 산정기준, 주차면적 산출식 설명)	
17	토지이용계획도	• 시설별 대지면적, 형질변경면적, 건축물 면적 제시 - 형질변경 위치와 면적을 정확히 표기 • 조성녹지, 보전녹지 별도 표기	
18	시설배치계획도	• 위성사진 위에 시설배치도를 엎어서 표현 • 시설별 조성예시도 제시 (조성 전, 조성 후)	
19	조성녹지 식재계획	• 조성녹지 식재계획 및 도면을 구체적으로 제시 • 조성예시도 제시 (조성 전, 조성 후)	
20	건축계획	• 건축물에 대한 입면도, 평면도, 조성예시도 제시	
21	건축설계기법	• 친환경 건축설계기법 적용방안 제시	
22	시설별 절·성토 단면도	• 시설별 각각 절성토 단면도 제시 (종·횡단면도를 구체적으로 제시) •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옹벽이 생기면 그 부분을 최소화토록 계획	
23	오염방지 대책	• 시설물 입지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오염방지 대책 제시	
24	경관시뮬레이션	• 조성전, 조성후에 대한 경관시뮬레이션 제시	

201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수립을 위한

관리계획 기초조사 작성요령

2013. 8.

울 산 광 역 시

(도 시 계 획 과)

관리계획 기초조사 작성요령

Ⅰ. 공통사항

1. 글씨체, 크기, 용지여백 등은 아래와 같이 작성한다.

   가. 대제목(Ⅰ, Ⅱ 등)은 바탕체 16(장평100, 자간 0)

   나. 기타(대제목 외)는 명조체 14(장평 100, 자간 0)

   다. 용지규격 : A4(210mm×297mm)

   라. 인쇄 및 편철 : 양면, 좌철

   마. 용지여백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 20㎜, - 머리말, 꼬리말 : 5㎜

2. 계획서의 표지는 본 서식 표지와 같게 한다.

3. 내용은 어느 누구나 알기 쉽게 작성하며 함축적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4. 자료제출 마감 후 추가 제출이 불가능하므로 작성 자료에 대하여는 작성자가 최종 확정에 신중을 기하여 한다.

   - 구·군별 접수 마감일 확인 <광역시 제출 마감일 : 2013. 10. 31(목)>

5. 관리계획대상 시설물의 신청은 시설물 설치지역의 허가권자인 해당 구·군에서 일괄 확정하여 신청한다.

6. 인구, 가구, 건축물, 토지 등의 기본현황은 가장 최근에 공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2012. 12. 31.)

7. 본 자료가 관리계획수립의 기초가 되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현황을 정확히 파악, 기재하고 그 문제점도 함께 제시한다.

8. 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는 변경하지 않으며, 매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함을 감안하여 자료를 작성한다.

9. 관리계획대상 시설의 설치 근거(기준) 등 관련 문서를 첨부한다.

   - 법령, 관련 문서, 관보·공보 등

10. 입지타당성 검토서는 시설물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한다.

11. 기 승인받은 시설물중 현재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사업추진 가능여부 등)하여 제출한다.

12. 입지대상 시설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33조의 심사세부기준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리계획 대상에서 제외)

13. 각 시설물별 토지소유 등 권리관계서류를 첨부한다.

14. 위치도, 도면, 사진 등은 아래와 같이 작성한다.

가. 작성(촬영)방향 일치 : 용지 상방향 = 북측

- 위치도, 도면, 현장사진, 위성사진 등 각종 첨부도

나. 각 시설물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첨부 (※ 구군 자체 공용발급)

다. 위치도, 배치도 등 각각 첨부

라. 우측 상단에 축척 표기 (예, S=1:25,000)

마. 위치도

1) 규 격 : A4횡 규격

2) 축 척 : 국립지리원발행 1/25,000 또는 1/50,000 사용

3) 위치도의 2장 겹칠 경우 함장 후 작성

바. 배치도

1) 규 격 : A4횡 규격

2) 축 척 : 1/5,000 지형도 사용 (용지 규격에 따라 변경 가능)

- 등고선, 지적선, 인근 건물배치현황이 표기된 도면에 배치계획 작성

아. 색상표기 (위치도, 배치도 등)

구 분	개발제한구역	기시행	금회시행	향후시행	비고
색 상	청 색	녹 색	적 색	노랑색	

사. 사 진

1) 현황사진은 근·원경을 별도 촬영 및 해상도 높게 작성

※ A4횡 규격에 확대 사용 계획임

2) 현장 주요 설명사진(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별도 촬영)

3) 위성사진은 A4횡 규격으로 작성

Ⅱ. 관리대상 시설물(도시계획시설 및 대규모시설) - 신청기관(신청인)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에 따라 허용되는 도시계획시설은 시설결정 전에 미리 시설명·설치주최(사업시행지)·위치·규모 등을 관리계획에 반영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 관리대상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별지 9-1, 9-2)

가) 입지의 불가피성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당해 도시계획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적정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나) 시설설치의 시급성은 당해 시설물을 계획기간 중에 설치하여야 하는 이유를 중심으로 작성

다) 시설의 집행가능성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의 설치에 따라 주민 민원의 발생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작성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에 따라 허용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다음의 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결정전에 미리 시설명·설치주최(사업시행자)·위치·규모 등을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관리한다.

→ 관리대상 대규모시설의 설치(별지 10-1, 10-2, 10-3)

가) 대규모 건축물(시설)의 설치타당성은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최소의 시설기준이 적용되는지의 여부를 중심으로 작성

나) 집행가능성은 행위허가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작성

3. 시행령 별표1에서 허용하는 시설의 범위 내에서 반영하되, 조정가능지역의 설정 등 구역조정이 이루어지는 실정을 감안하여 입지가 불가피한 시설만을 관리계획에 반영한다.

4.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도시계획시설 및 대규모 건축물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5. 본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이나 대규모 건축물 및 토지형질 변경은 일체 불허가한다.

6. 관리계획 승인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시설만을 관리계획에 반영한다.

7. 구·군에서 관리대상 시설 작성시 향후 허가 가능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작성한다.

8. (대외기관)시설물 신청서류 작성 전(업무편의를 위하여) 허가권자와 입지, 허가 가능여부 등을 사전 협의 후 그 결과에 따라 서류를 작성 제출한다.

Ⅲ. 구·군별 관리계획 담당부서(시설물 설치 계획서 문의·신청처)

○ 도시계획시설 및 대규모 시설의 신청(자)기관은 관리계획 반영 대상시설물 설치지역의 허가권자인 해당 구·군으로 신청한다.

○ 구·군별 담당부서

구 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	비 고
중 구	건설도시국 도시과	290-3923	290-3909	
남 구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	226-5883	226-5256	
동 구	건설도시국 도시디자인과	209-3874	209-3859	
북 구	도시경제국 도시녹지과	241-7904	241-7909	
울주군	건설도시국 도시과	229-7774	229-7779	

(별지)

개발제한구역내 인구 및 가구

1-1 인구 및 가구현황 총괄

(가구, 명)

구 분	합 계	구역지정 이전 거주자						구역지정 이후 거주자					
		계		자 가		세 입		계		자 가		세 입	
	가구 인구	가구	인구	가구	인구	가구	인구	가구	인구	가구	인구	가구	인구
구·군별													

주) 1. 인구 및 가구는 주민등록상 인구 및 가구를 기준으로 함

2. 결혼(분가)한 차남이 부모의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는 경우 세입가구로 분류

1-2 구역지정 이후 거주자의 거주기간

(가구, 명)

구 분	합 계	1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10년미만		15년미만		20년미만		20년이상	
	가구 인구	가구	인구	가구	인구	가구	인구	가구	인구	가구	인구	가구	인구	가구	인구
구·군별															

주) 주민등록 기준

개발제한구역내 지목별 토지현황

2. 지목별 토지현황

(필지, ㎡)

구 분	합 계	임 야		전		답		대 지		잡종지		과수원		기 타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구·군별															

주) 구역 경계에 걸쳐 있는 경우에도 1필지로 조사

토지소유 현황

3-1 토지소유권 분포

(필지, ㎡)

구 분	합 계	사 유								국·공유					
		소 계		개 인		법 인		종 중		소 계		국 유		공 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구·군별															

3-2 : 구역지정이후 외지인 취득토지의 소유기간별 현황

(필지, ㎡)

구 분	합 계		1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10년미만		15년미만	20년미만		20년이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구·군별																

건축물 현황

4-1 : 건축물 현황(총괄)

(동, ㎡)

구 분	합 계		주건축물		부속건축물	
	동 수	면 적	동 수	면 적	동 수	면 적
구·군별						

주) 면적은 건축물의 연면적임

4-2 : 주건축물의 용도별 현황

(동, ㎡)

구 분	합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창 고		동물관련시설		기 타	
	동수	면적	동수	면적	동수	면적	동수	면적	동수	면적	동수	면적	동수	면적	동수	면적
구·군별																

주) 면적은 건축물의 연면적임

4-3 : 부속건축물의 용도별 현황

(동, ㎡)

구 분	합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창 고		동물관련시설		기 타	
	동수	면적	동수	면적	동수	면적	동수	면적	동수	면적	동수	면적	동수	면적	동수	면적
구·군별																

주) 면적은 건축물의 연면적임

도시계획시설 조성현황

5-1 : 도로조성현황

(개소, ㎡)

구 분	합 계		조성완료		미조성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구·군별						

5-2 : 공원조성현황

(개소, ㎡)

구 분	합 계		조성완료		미조성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구·군별						

5-3 : 기타 도시계획시설 조성현황

(개소, ㎡)

구 분	합 계		조성완료		미조성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구·군별						

중복규제지역 현황

6 : 중복규제지역 현황

(필지, ㎡)

구 분	합 계		상수원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공원			
													국립공원		도시공원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구·군별																

집단취락 현황

7 : 집단취락 현황

(개소, ㎡)

구 분	총 괄		인구·가구		건축물(동)	
	개소	면적	인구(명)	가구수	주건축물	부속건축물
구·군별						

주) 1. 10호이상 20호미만(서울특별시는 100미만)의 집단취락에 대하여 현황 조사

주) 2. 구군별로 집단취락의 식별번호, 위치, 명칭, 면적, 인구·가구, 건축물(주 건축물 및 부속건축물)이 포함된 세부내역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함

개발제한구역내 나대지 현황

8-1 : 조성시기별 나대지 현황

(필지, ㎡)

구 분	합 계		구역지정 이전 조성		구역지정 이후 조성	
	필 지	면 적	필 지	면 적	필 지	면 적
구·군별						

8-2 : 이축적지 현황

(필지, ㎡)

구 분	합 계		구역지정 이전 조성					구역지정 이후 조성					
			계		내 지		기타 지목	계		내 지		기타 지목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구·군별														

주) 1.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공공용지로 사용되는 이축적지는 제외

2. 구·군별로 이축적지에 대한 지번, 지목, 면적, 현재이용상황, 이축일자, 이축사유, 이축지의 지번 등이 포함된 세부내역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함

관리대상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9-1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일련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사 업 시행자	위 치	면적(㎡)		비고
					토지 형질변경	건축 연면적	

9-2 : 도시계획시설의 입지타당성 검토서

○ 도시계획시설명 : ○ 해당조서번호 : ○ 일련번호 : ○ 위치 : 시(군) 동(면) 리 번지 ○ 면적 : ○ 사업시행자 : ○ 입지의 불가피성(구역외 적정부지 존재여부 포함) - ○ 시설설치의 시급성 - ○ 설치재원 예산확보 현황 - ○ 시설의 집행가능성(민원제기 가능성 포함) -
○ 위치도

주) 1. 해당조서번호는 유사 도시계획시설별로 분류한 조서에 부여한 식별번호를 의미함

2. 일련번호는 당해 조서에서 도시계획시설물에 부여한 식별번호를 의미함

3. 입지의 불가피성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당해 도시계획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적정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4. 시설설치의 시급성은 당해시설물을 계획기간 중에 설치하여야 하는 이유를 중심으로 작성

5. 시설의 집행가능성에 있어서는 당해시설물의 설치에 따라 주민민원의 발생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작성

6. 해당조서의 후단에 일련번호 순서에 따라서 보고서에 수록

7. 위치도는 지적도상에 시설물 등을 표기하고, 현장사진(근, 원경) 및 시설물의 배치도를 별도 첨부한다.

관리대상 대규모시설의 설치

10-1 : 대규모 토지형질변경(10,000㎡ 이상)을 수반하는 시설물

일련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사업시행자	위치	면적(㎡)		비고
					토지형질변경	건축연면적	

10-2 : 대규모 건축물(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

일련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사업시행자	위치	면적(㎡)		비고
					토지형질변경	건축연면적	

10-3 :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의 입지타당성 검토서

○ 건축물(또는 시설)의 명칭 : ○ 해당조서번호 : ○ 일련번호 : ○ 위치 : 시(군) 동(면) 리 번지 ○ 면적 : ○ 사업시행자 : ○ 행위허가 근거규정 - ○ 입지의 불가피성(구역외 적정부지 존재여부 포함) - ○ 건축물(또는 시설) 설치의 타당성 및 시급성 - ○ 설치재원 예산확보 현황 - ○ 집행가능성(민원제기 가능성 포함) -
○ 위치도

주) 1. 해당조서번호는 조서의 식별번호(10-1 또는 10-2)를 의미함

2. 일련번호는 당해 조서에서 도시계획시설물에 부여한 식별번호를 의미함

3. 입지의 불가피성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당해 도시계획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적정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4. 건축물(또는 시설) 설치의 타당성은 관련법령에서 허용하는 최소의 시설기준이 적용되는지의 여부를 중심으로 작성하고, 시급성은 당해시설물을 계획기간 중에 설치하여야 하는 이유를 중심으로 작성

5. 집행가능성은 행위허가에 따른 주민의견청취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작성

6. 해당조서의 후단에 일련번호 순서에 따라서 보고서에 수록

7. 위치도는 지적도상에 시설물 등을 표기하고, 현장사진(근, 원경) 및 시설물의 배치도를 별도 첨부한다.

취락지구 지정가능 집단취락 현황

11 : 취락지구 지정가능 집단취락 현황

(개소, ㎡)

구 분	총 괄		인구·가구		건축물	
	개소	면적	인구(명)	가구수	주건축물	부속건축물
구·군별						

주) 구·군별로 집단취락의 식별번호, 위치, 명칭, 면적, 인구·가구, 건축물(주 건축물 및 부속건축물)이 포함된 세부내역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함